

국세신고안내

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

홈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> 종합부동산...
> **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**

글자크기 가 가 가 가

개인신고안내

- 종합소득세
- 주택임대소득
- 종교인소득
- 부가가치세
- 사업장현황신고
- 원천세
- 연말정산
- 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

상속·증여 세금 상식

상속세

증여세

종합부동산세

기본정보

종합부동산세 개요

납부기한

세액계산 흐름도

세율

가산세

납부 종합 안내

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

[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](#)

주요서식

동영상자료실

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

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	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	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	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
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	주택건설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	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안내	

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

납세의무자

과세기준일 현재 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,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.

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,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

다만,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

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 차이

구분	특례적용(22.6.1.기준 판단)	특례 미적용 포함
납세의무자	지분율이 큰 자(같은 경우 선택)	각각 납세의무자

세금납부 안내

법인신고안내 +

국세상담센터 126

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.

평일 9시~18시 (탈세제보는 24시간)

구분	특례적용("22.6.1.기준 판단)	특례 미적용 포함
공제금액	12억원	각각 9억원씩
세액공제*	가능 (최대 80%,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)	불가능

* 연 령 : 만60세 이상(20%), 만65세 이상(30%), 만70세 이상(40%)
 보유기간 : 5년 이상(20%), 10년 이상(40%), 15년 이상(50%)
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.16.~9.30.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.

다만,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
 매우불만족 평가하기